

■ 도로교통법 시행령 [별표 5의3] <신설 2024. 9. 19.>

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87조의3제5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,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 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단기간 내에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 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47조의3 제2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			
1) 제8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47조의3 제2항제2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2) 제87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중 둘 이상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147조의3 제2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